공고 제 105 호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6년 11월 25일

영종2동장 인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최 *석	최 *석 1981-12-14	인천광역시 영종구 하늘별빛로 (중산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6-11-12